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2-1109호

##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71호(2017.7.2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8-426호(2018.03.22)로 실시계획인가된 수색·중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도서가 제출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1)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21 일원
- 2) 사회복지시설(어르신케어센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54-10 일원
- 3) 문화시설(아동·청소년지역예술교육센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58-10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및 문화시설(아동·청소년지역예술교육센터)
- 2) 명 칭 :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신축사업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주재성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68, 3층(수색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3.03.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3.07.31.

**마. 건축규모**

| 구분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비고 |
|-------------------------------|----------|---------|----------|----------|-----------|----------|----|
|                               | 당초       | 변경      | 변경 후     | 당초       | 변경        | 변경 후     |    |
| 사회복지시설<br>(어린이집)              | 210.48   | -18.00  | 192.48   | 603.72   | +1.68     | 605.40   |    |
| 사회복지시설<br>(어르신케어센터)           | 392.55   | +19.30  | 411.85   | 901.96   | +1,296.58 | 2,198.54 |    |
| 문화시설<br>(아동·청소년 지역예술<br>교육센터) | 791.11   | +131.50 | 922.61   | 3,045.39 | -81.54    | 2,963.85 |    |
| 계                             | 1,394.14 | +132.80 | 1,526.94 | 4,551.07 | +1,216.72 | 5,767.79 |    |

**바. 자금계획,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명세 및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열람도서 참조**

**사. 공람기간 : 2022. 6. 30. ~ 202. 7. 14.(14일간)**

**아.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1)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23)
- 2)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07-0412)

**자.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2022 - 111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사항 및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 조항 등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 변경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3호)
- 다. 공동주택 등의 신축 및 폐기물 배출 시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 권장을 위한 정의 조항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제7호, 안 제8조, 안 제10조)
- 라.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 판매, 수수료의 세입처리(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4, 안 별표 4)(「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조항 신설)
- 마.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7조의3)
- 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현실에 맞게 정비(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 반영)(안 별표 1)

- 사. 악취분야에 대한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 개선을 위한 내용 신설(안 제9조)
- 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
-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14조)
- 차.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한 조항 삭제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게 하고 별표 2 삭제(안 제17조, 안 별표 2)
- 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안 제7조제6항,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0조제3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2호, 안 제16조제1항 및 4항, 안 제1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 전화 : 02-351-7592, FAX : 02-351-5665, 또는 E-mail : kye8668@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고시’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       |           |
|-------|-----------|
| 제출년월일 | 2022. . . |
| 제출자   | 교통환경국장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사항 및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 조항 등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 변경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3호)
- 다. 공동주택 등의 신축 및 폐기물 배출 시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 권장을 위한 정의 조항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제7호, 안 제8조, 안 제10조)
- 라.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 판매, 수수료의 세입처리(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4, 안 별표 4)(「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조항 신설)
- 마.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7조의3)
- 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현실에 맞게 정비(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 반영)(안 별표 1)
- 사. 악취분야에 대한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관리 개선을 위한 내용 신설(안 제9조)
- 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
-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14조)
- 차.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한 조항 삭제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게 하고 별표 2 삭제(안 제17조, 안 별표 2)  
 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안 제7조제6항,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0조제3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2호, 안 제16조제1항 및 4항, 안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2. 6. 30. ~ 2022. 7. 20. (예정)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없음(가족정책과-21049호, 2022.6.20.)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이상없음(감사담당관-7095호, 2022.6.21.)

작성자 :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김영은 (전화 759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발생 억제”를 “발생억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폐기물을”을 “폐기물”로, “부산물 포함)”을 “부산물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정보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로, “발생 억제”를 “발생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를 “폐기물 발생억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폐기물 발생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접객업”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을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을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에 따른”으로,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해당”을 “해당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수수료라”를 ““수수료”라”로, “종량제 시행”을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로, “부과 한”을 “부과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4호”를 “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 판매)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은 공급대행자 또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7조의3(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의4(수수료의 세입처리)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및 방법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적정처리 할”을 “적정처리 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용봉투”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용이하 고”를 “쉽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접객업소(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조”를 “법 제15조”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을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을”로, “수거용기에 대하여는”을 “전용수거용기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세 대이상”을 “20세대 이상”으로, “전용수거용기를”을 “전용수거용기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거용기가”를 “전용수거용기 등이”로, “대 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를 “영 제8조”로, “폐기물재 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하고자 하는”을 “처리하려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을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5조의2 제3항제1호”를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조하고자 하는”을 “건조하려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법 제15조의2 제3항”을 “법 제15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0서식)”을 “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제15조의2 제3항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을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해당”을 “해당한다”로 한다.

1.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규칙 별지 35호의2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아니한 사람 또는”을 “않은 사람 또는”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열거되지 아니한**”을 “**규정되지 않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8조제1항 관련)**1. 품목 및 배출요령**

| 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
| 음식물류<br>폐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쓰레기</li> <li>-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 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li> <li>-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행구어 배출</li> <li>-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겉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li> </ul> |
| <b>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b> |                                                                                                                    |                                                                                                                                                                                                                                                                       |
| 채소류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
|                               | 고추씨 등                                                                                                              |                                                                                                                                                                                                                                                                       |
|                               |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                                                                                                                                                                                                                                                                       |
|                               |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                                                                                                                                                                                                                                                                       |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
|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 곡 류                           | 왕겨                                                                                                                 |                                                                                                                                                                                                                                                                       |
| 육 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
|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
|                               | 생선뼈                                                                                                                |                                                                                                                                                                                                                                                                       |
|                               |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                                                                                                                                                                                                                                                                       |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
| 기 타                           |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별 분리배출 방법

-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보라색)에 넣은 후 건물 앞 배출  
(전용봉투를 수거전용 배출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 또는 RFID 종량 및 감량화 기기에  
직접 배출

- 식품접객업소(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직접 배출

※ 다만, 공동주택(20세대 이상)과 식품접객업소(다량배출사업장 제외)의 경우에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칩, RFID 등을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자동집하(수송관로)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구분<br>용량 | 일반가정(단독·공동) |        |            |        | 소형음식점 등<br>(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            |        |
|----------|-------------|--------|------------|--------|-------------------------|--------|------------|--------|
|          | 2015.7.1부터  |        | 2017.1.1부터 |        | 2015.7.1부터              |        | 2017.1.1부터 |        |
|          | ℓ           | kg     | ℓ          | kg     | ℓ                       | kg     | ℓ          | kg     |
| 1        | 70          | 100    | 100        | 130    | 100                     | 130    | 140        | 190    |
| 2        | 140         | 200    | 200        | 260    | 200                     | 260    | 280        | 380    |
| 3        | 210         | 300    | 300        | 390    | 300                     | 390    | 420        | 570    |
| 5        | 350         | 500    | 500        | 650    | 500                     | 650    | 700        | 950    |
| 10       | 700         | 1,000  | 1,000      | 1,300  | 1,000                   | 1,300  | 1,400      | 1,900  |
| 20       | 1,400       | 2,000  | 2,000      | 2,600  | 2,000                   | 2,600  | 2,800      | 3,800  |
| 40       | 2,800       | 4,000  | 4,000      | 5,200  | 4,000                   | 5,200  | 5,600      | 7,600  |
| 60       | 4,200       | 6,000  | 6,000      | 7,800  | 6,000                   | 7,800  | 8,400      | 11,400 |
| 120      | 8,400       | 12,000 | 12,000     | 15,600 | 12,000                  | 15,600 | 16,800     | 22,800 |

※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가격과 동일함

##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제7조의2 관련)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

| 구분                     | 색상     | 종류<br>(L) | 규격             | 비고                                                                                                                                                                                                     |
|------------------------|--------|-----------|----------------|--------------------------------------------------------------------------------------------------------------------------------------------------------------------------------------------------------|
| 공동주택                   | 빨강색    | 120       | 150mm×<br>30m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QR코드 등을 표시</li> <li>-불법제작, 유통방지를 위한 2차원 바코드 등 일련번호 표시</li> <li>-단,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li> </ul> |
|                        | 파랑색    | 60        |                |                                                                                                                                                                                                        |
| 음식업소 등<br>(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별도로 정함 | 5         |                |                                                                                                                                                                                                        |
|                        |        | 10        |                |                                                                                                                                                                                                        |
|                        |        | 20        |                |                                                                                                                                                                                                        |
|                        |        | 40        |                |                                                                                                                                                                                                        |
|                        |        | 60        |                |                                                                                                                                                                                                        |
|                        |        | 120       |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u>서울특별시 은평구</u><br><u>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u><br><u>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u> |   | <u>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u><br><u>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u><br><u>재활용에 관한 조례</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   | 제2조(정의) -----                                                          |   |   |
| 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   | ----- <u>뜻</u> 는 -----.                                                |   |   |
| 1. (생 략)                                                                |   | 1. (현행과 같음)                                                            |   |   |
| 2. “음식물류 폐기물 <u>발생 억제</u> ”                                             |   | 2. ----- <u>발생억제</u> ---                                               |   |   |
| 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   | -----                                                                  |   |   |
| 생산·유통·가공·조리·보                                                           |   | -----                                                                  |   |   |
| 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                                                          |   | -----                                                                  |   |   |
| 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                                                         |   | -----                                                                  |   |   |
| 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 -----.                                                                 |   |   |
|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   |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   |   |
| 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   | 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   |   |
|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
| 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                                                        |   |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   |   |
| 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                                                         |   |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                                                        |   |   |
| 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   | 업장을 말한다.                                                               |   |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                                                                        |   |   |
| 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중                                                         |   |                                                                        |   |   |
|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                                                          |   |                                                                        |   |   |
| 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                                                        |   |                                                                        |   |   |
| 스크림류 등의 영업 중 신고                                                         |   |                                                                        |   |   |

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략)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4. -----  
-----  
-----  
-----  
그 밖의 -----  
-----.

5. (현행과 같음)

6. -----  
----- 폐기물-----  
----- 부산물을 포함  
한다)을 -----  
-----  
-----.

7.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정보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  
-----  
-----  
-----.

제5조(구청장 및 사업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제5조(구청장 및 사업자 등의 책무) ①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발생억제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 폐기물 발생억제를 -----

② -----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칼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택도 조사, 잔반

-----  
-----  
----- 폐기물  
발생억제-----

③ -----  
-----(단체를 포함  
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  
-----  
-----  
--.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  
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  
제를 -----  
-----  
-----  
-----  
-----.

⑤ -----  
-- 다음 각 호와 -----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  
는 자: -----  
-----

-----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  
-- 자: -----  
-----  
-----  
--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에 따른 --  
자: -----  
-----  
-----  
-----  
-----

[illegible]

## ⑦ (생 략)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운영주체별로 배출량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공동주택은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  
-----  
“수수료”라 -----  
----- “종량제 시  
행”이라 한다-----  
-----.

② -----  
-----  
-----  
-----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전용수거용기  
(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  
-----  
-----  
----- 부과한 -----

분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

⑥ -----  
----- 수집·운반·처리하려는 -----  
-----  
---. -- 규칙 제10조제4호-----  
-----  
-----.

제7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 판매)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은 공급대행자 또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7조의3(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의4(수수료의 세입처리)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

-----

-----

### <신 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및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한 품목과 배출

요령 및 배출방법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은평환경플랜트 설치 지역은 제외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구 전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중

----- 별표 1-----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 적정처리할

-----

-----

-----

-----

-----.

2. -----

----- 음식물류 폐기물 전

용봉투----- 전용

수거용기, RFID 종량 및 감량

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이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고, 용량은 구청장이 수거체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쉬운 -----  
-----.

③ -----  
----- 쉽고 -----  
-----  
-----  
-----  
-----  
-----  
-----  
---. 이 경우 식품접객업소(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① ----- 법 제15조 -----  
-----  
-----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을 -----  
-----  
-----  
----- 전용수거용기 등은 -----  
-----  
-----.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

② -----  
----- 20세대 이상-----  
-----  
-----  
----- 전용수거용기 등을 -----  
-----  
-----  
-----  
-----  
-----.

③ -----  
-----  
-----  
-----  
----- 전용수거용기 등이 -----  
-----  
-----  
-----  
----- 대해서-----  
-----  
-----.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를 예산 범위

----- 영 제8조 -----

----- 폐기물처리 신고자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라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

----- 예산의 범위 -----

위-----

②

처리하려는

제13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  
-----  
-----  
-----  
-----  
-----  
-----.

1. -----  
-----  
-- 법 제15조의2제3항 제1호-----  
-----  
-----  
-----  
-----  
-----  
-----  
-----  
-----  
-----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3. (생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에(“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

2. -----  
-- 건조하려는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제14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  
-----  
-----  
--.

1.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생략)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시행규칙 별지 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

2. -----  
----- 법 제15조의2제3항-----  
-----  
-----  
-----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규칙 별지 35호의2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  
-----

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의2 제3항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8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법 제68조에

----- 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  
----- 해당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 않은 사람 또는 -----

않은 -----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량배출사업장---

---- 마련-----.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삭 제>

제18조(준용규정) ----- 규정  
되지 않은 -----  
-----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2-11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내용이 다수 존재하고 통합 관리가 법규 세부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 전화 : 02-351-7592, Fax : 02-351-5665 또는 E-mail : kye8668@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가. 이 규칙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고시’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  |
|------------|--|
| 의 안<br>번 호 |  |
|------------|--|

|                |                     |
|----------------|---------------------|
| 제출년월일<br>제 출 자 | 2022. . .<br>교통환경국장 |
|----------------|---------------------|

##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내용이 다수 존재하고 통합 관리가 법규 세부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6. 30. ~ 2022. 7. 20. (20일간)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김영은 (전화 7592)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2022 - 111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지역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 전화 : 02-351-6834, FAX : 02-351-5648 또는 E-mail : silverline@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고시·공고'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 안<br>번 호 |  |
|------------|--|

|                |                |
|----------------|----------------|
| 제출년월일<br>제 출 자 | . . .<br>은평구청장 |
|----------------|----------------|

## 1. 제안이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착한가격업소 지원 인센티브 예산 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2. 6. 30. ~ 2022. 7. 20. (예정)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21469호, 2022. 6. 22.)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이상없음(감사담당관-7094호, 2022. 6. 21.)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유준원(전화 683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방역물품 및 소득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상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2022-111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품권운영자금 관리 의무 신설 (안 제3조의2)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문구 변경 (안 제5조~제6조)
- 다. 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변경 (안 제4조)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수정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 전화 : 02-351-6832, FAX : 02-351-5648 또는 E-mail : 5106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고시·공고'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br>번 호 |  |
|------------|--|

|       |            |
|-------|------------|
| 제출년월일 | 2022. 6. . |
| 제 출 자 | 재정경제국장     |

##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품권운영자금 관리 의무 신설(안 제3조의2)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문구 변경(안 제5조~제6조)
- 다. 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변경(안 제4조)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수정(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2022. 6. 30. ~ 2022. 7. 20. (예정)
-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작성제외법령(가족정책과-21468호, 2022.06.22.)
-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이상없음(감사담당관-7143호, 2022.06.22.)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진민곤 (전화 683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을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제4조제4항”을 “한다)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말을”을 “말일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업종”이란을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업종”을 “업종이나 사업체”로 한다.

제6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개                                                                                                                                                                                                                                                   | 정 | 안 |
|-----------------------------------------------------------------------------------------------------------------------|-----------------------------------------------------------------------------------------------------------------------------------------------------------------------------------------------------------------------------------------------------|---|---|
| 제3조(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서울특별시 <u>은평구청장</u>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은평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 <u>은평구청장</u> (이하 “구청장”-----                                                                                                                                                                                           |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br>-- <u>한다) 제4조제4항</u> -----                                                                                                                                                                                                               |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 ④ ~ ⑥ (생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 <u>&lt;신 설&gt;</u>                                                                                                    | <u>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구</u><br><u>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u><br><u>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u><br><u>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u><br><u>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u><br><u>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u><br><u>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u><br><u>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u><br><u>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u> |   |   |

구 금고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  
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  
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  
다.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  
대행점은 판매량, 재고량, 회수  
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  
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상품권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

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신청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말일  
을 -----  
-----  
---. -----  
-----  
-----.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

-----  
-----  
-----  
----- 제출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비율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  
 -----  
 ---.